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호

438

제출년월일 : '95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의 폐지등이 포함된 획기적인 "소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" ('95. 2. 7)에 따라,
- 그 후속 조치로 소방법에서 시·도화재예방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일부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도록 내무부의 시·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준칙(안)에 의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 (안 제30조)
 - 지정수량 1/5이상 1미만인 소량위험물,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폐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, 영 별표4에서 정한 수량의 특수가연물 취급신고
- 별칙 (안 제43조제1항)
 - 소량위험물, 농예용 또는 어폐류 양식장용 난방시설(10배미만), 특수 가연물 저장, 취급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(20만원 이하)
-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서식

3. 제안근거

- 내무부 시·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준칙 (안)

4. 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절의 절명 “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”를
“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”으로 한다.

제30조(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)중 제1항내지 제3항 본문을 삭제한다.

제43조(별칙) 제1항중 “제28조내지”를 “제28조와 제29조 및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내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